

어떤 공사를 갑, 을, 병 3사(갑:45, 을:30, 병:25)가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각사의 지분율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하나 3사 합의에 의해 주관사가 시행을 하지 아니하고 3사의 협정서에 의거 주관사가 아닌 을사가 일괄 시행을 하고 안전관리비 또한 일괄정산시 목적외 사용을 하였을 때 주관사 및 병사에 대한 법적인 책임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그리고 PQ 심사시 별점은 부여되지 않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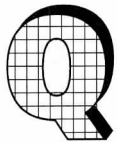
갑, 을, 병(갑:45, 을:30, 병:25) 공동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각사 합의에 의해 주관사인 갑사가 아닌 을사에서 일괄적으로 동공사를 시공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외 사용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관계에 대해서는 각 3사의 합의에 의해 을사에서 일괄 시공한 것이 명백히 인정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동공사를 시공한 을사에 책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검정, 불량 가설기자재를 자진 신고하고, 한국건설가설협회에 미검정 가설자재에 대한 성능확인 검사를 신청하였습니다. 미검정 가설자재에 대한 성능확인심사 수수료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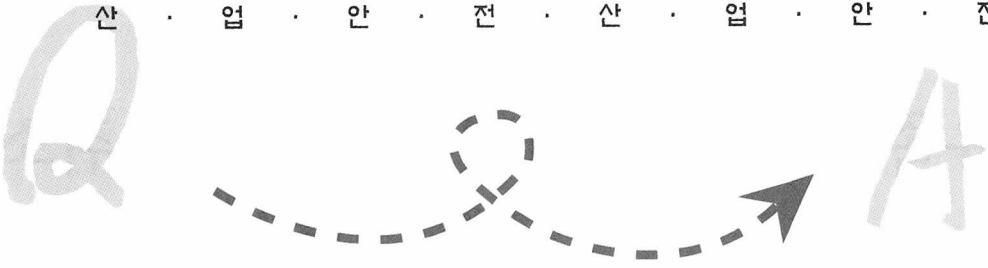
미검정, 불량 가설기자재를 자진 신고한 후 한국건설가설협회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 검사를 받았다면 동 검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대상공사 등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관리에 도움을 받고자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지도대가를 지불하였다면 이 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요.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인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 공사는 아니고 10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 현장의 경우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다면 동 기술지도 대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 및 사용기준』 항목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에서 정하는 한도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때 기술지도 실시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 등을 거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매월 급여에 대출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를 급여명세서에 지급하고 세금공제시 이자금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주처에 안전관리비 사용명세서 제출시 대출이자를 포함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출이자금액을 빼고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전세자금 이자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가 대출한 금액 중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급여명세서에 별도의 항목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면서 동시에 이를 급여 수령시 공제한다 할지라도 동 금액은 위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포함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유해인자가 2 이상인 경우에 배치후 건강진단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와(예, 소음과 유기용제, 소음과 특정화학물질 등) 유기용제(트리클로로에틸렌) 취급으로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취급하는 유기용제를 1,1-트리클로로에탄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주기에 맞추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지, 아니면 배치전·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또한, 용역회사에서 파견한 사무실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누가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유해인자가 2이상인 경우에 배치후 건강진단은 유해인자 중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가 가장 짧은 유해인자 주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유해인자 N,N-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 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등 6종을 제외한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은 배치전 건강진단, 배치후 6월이내 건강진단, 그후 1년에 1회이상 주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용역회사에서 파견된 사무실 근로자에 대한 정기건강진단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당해 근로자의 고용종속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회사, 즉 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